메는 사용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5회

(02/09)

1.	법률행위가	정지조건부법률행위에	해당한다는	사실은	ユ	법률행위로	인한	법률효과의
	발생을 다투	려는 자에게 주장입증	책임이 있다.	()				

- 2.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. (
- 3. '입목에 관한 법률'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 (
- 4.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 경작자의 소유 로 한다. ()
- 5.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. ()
- 6.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로써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. ()
- 7.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. ()
- 8.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등기명의자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에 합치하기 위한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. ()
- 9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()
- 10.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. ()
- 11.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 ()
- 12. 점유를 하지 않는 저당권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 (
- 13.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건물소유자에게 대항하 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. ()
- 14. 3자간 순차 매매하여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실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3자 합의가 없었 다면 그 등기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. ()

메른♥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5회

(02/09)

- 15.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甲, 乙, 丙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. ()
- 16.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양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양수인은 채무자인 등기명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. ()
- 17.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용・수익하다가 丙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,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 ()

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O) 정지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효과발생을 다투는 자, 즉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, 조건의 성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
- 2. (X)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일부에 설정가능하다
- 3. (O)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등기된 입목은 가능하다
- 4. (X) 경작자는 명인방법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
- 5. (0)
- 6. (X)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창설하며 당사자의 합의로써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
- 7. (0)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행사할 수 있다
- 8. (O) 물권적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
- 9. (O) 물권과 물권적청구권은 운명을 함께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
- 10. (X)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
- 11. (X) 유치권자는 본권인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하다
- 12. (X)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방해제거나 예방청구는 인정된다
- 13. (X)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은 처분시에 등기를 요하며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
- 14. (X)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이다
- 15. (O)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위, 3자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
- 16. (O)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양도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채무자인 등기명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채무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
- 17. (X)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